```
[ 2017. 7. 26.] [ 1 , 2017. 7. 26.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 02 - 2100 - 3534
                 ه و 64
1 ( )
          . < 2017. 5. 12.>
2 (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. 4. 1.>
1. "
 가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2. 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 2 2 가
3 (
            ) 2 1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< 2010. 4. 21., 2015. 4. 1.>
2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.< 2015. 4. 1.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 _____ 112 1
4 (
               )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. 4. 1.>
[ 2010. 4. 21.]
5 (
       )
                  . <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[ 2010. 4. 21.]
       < 1 ,2017. 7. 26. >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1 (
      )
2
     7
8 (
            ) 29
 30
 5
 31 < 64 >
```

[별표 1] <개정 2015.4.1.>

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(제3조제1항 관련)

- 1.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- 가, 다른 지역에서 재난·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 금품 지급 및 식사(다과·주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제공
 - 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·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, 피해 자 및 그 유가족,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

2. 시책 또는 지역 홍보

- 가.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
- 나. 다른 기관·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, 관계자에게 식 사 제공
- 다. 내방객(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)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
- 라.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

3. 학술·문화예술·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, 월드컵대회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전국체육대회, 시·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나. 공연단, 악단, 영화·연극단, 예술단, 학술단체, 사물놀이단, 합창단, 공공기관,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다.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·단체·센터에 대한 격 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2

4.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·간담회·행사

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 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 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
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. 이 경우 회의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 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- 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(「공직선거법」 제86 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)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라.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, 영사, 교민,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,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
- 마.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민간단체, 학회,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, 교육, 현지조사·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5. 현업(현장)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- 가. 군부대, 전투경찰대, 소방서(파출소 포함), 경찰서(지구대 등 포함), 우체국,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(현장)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
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,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, 교통정리, 치안유지,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(지구대 등 포함), 소방서 (파출소 포함),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6.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(사업소와 읍·면·동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

3

- 나,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
- 다.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
- 라.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, 청사방호원, 주·정차단속원, 불법광고물 단속원, 그린벨트 단속원, 하천감시원, 환경미화원,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,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
- 마.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
- 바.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, 재해,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사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(시· 도의 경우 시·군·구를 포함한다)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아,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, 설, 추석 또는 그의 생일 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

7.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

- 가, 해당 지방의회, 국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, 군부대, 경찰서, 금융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(이하 "유관기관"이라 한다)와의 공동행사(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), 회의,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·출입하는 경 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·화분·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
- 다.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,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·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
-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
 - 가,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·다과재료의 구입
 - 나. 축의·부의금품
 - 1) 지급대상 범위: 결혼 또는 사망
 - 2) 지급 대상자: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- 3)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
 - 가) 「공직선거법」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

4

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 우

- 소속 상근직원(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) 나) "가)"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
- 소속 상근직원[본청·지방의회·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, 시(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(행정구를 포함한다)의 경우는 읍·면·동 직원을 포함한다]
-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
-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
- 9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

[별표 2] <신설 2015.4.1.>

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
- 1.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·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(다과·주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제 공
 - 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·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, 피해 자 및 그 유가족,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다.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

2.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

- 가.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
- 나. 다른 지방의회·기관·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,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
- 다. 내방객(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)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
- 라.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
- 마.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·명함·명패 등의 제작

3.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,월드컵대회,세계선수권대회,아시아경기대회,전국체육대회,시·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

- 4.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·간담회·행사·교육
 - 가.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(정례회, 임시회를 포함한다)에 참석한 지방의 원에 대한 식사 제공
 - 나,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,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
 - 다. 해당 지방의회, 다른 지방의회,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

6

- 라.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,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,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
- 마.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,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- 바.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사,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, 영사, 교민,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 자,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
- 아. 다른 지방의회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민간단체, 학회,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, 교육, 현지조사·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5. 현업(현장)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- 가. 군부대, 전투경찰대, 소방서(파출소 포함), 경찰서(지구대 등 포함), 우체국,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(현장)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
 - 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,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 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다.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, 교통정리, 치안유지,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(지구대 등 포함), 소방서(파출소 포함),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6. 소속 의원·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- 가.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(의회사무처·국·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
 - 나,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
 - 다.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(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)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
 - 라.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
 - 마.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, 재해,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
 - 바,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, 환경미화원, 운전원 등 현장근

7

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

- 사,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, 설,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 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
- 7.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
 - 가, 해당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다른 지방의회, 교육기관, 군부대, 경찰서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(이하 "유관기관"이라 한다)와의 공동행사, 회의,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·취임 또는 전·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·화분·기념품 및 식사 제공
 - 다.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,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 인 수준의 화환·화분 제공
- 8.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
 - 가,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· 다과재료의 구입
 - 나. 축의·부의금품(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)
 - 1) 지급대상 범위: 결혼 또는 사망
 - 2) 지급 대상자: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
- 9.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